



인천광역시

생활속거리두기
새로운 일상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및 운영
자제 권고 발령

1. 관련문서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0347(2020.5.4.) 호
- 나. 보건의료정책과-11687(2020. 5.13.) 호
- 다.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1508(2020. 5.14.) 호
- 라.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1675(2020. 5.19.) 호
- 마.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1697(2020. 5.20.) 호

2. 최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학원강사)의 접촉자 중 관내 중·고등학생 등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를 통한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아래 업종이 코로나19 집단발생 시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집합금지 조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오니,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업종)

- 집합금지 조치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 방역수칙 준수 및 운영자제 권고 :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실내체육시설

나. 기간 및 내용

행정명령	유형별	기 간	내 용
집합금지 조치 발령	유흥주점및 콜라텍	(연장)20. 5. 24. ~ 6. 7. (*단 시간은 20. 5. 24. 20시 ~ 6. 7. 24시까지)	-대상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콜라텍
	단란주점	20. 5. 25 ~ 6. 7.	- 대상 :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변경 및 연장) 20. 5. 25. ~ 6. 7.	- 대상 :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 내용 ·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하여 모든 시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 ·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

방역수칙 준수 및 운영자제 권고 발령	학원	(연장)20. 5. 25 ~ 6. 7.	- 대상 : 관내 학원
	PC방	(연장)20. 5. 25 ~ 6. 7.	- 대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실내 체육 시설	(연장)20. 5. 25 ~ 6. 7.	- 대상 : 실내체육시설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노래연습장	(연장)20. 5. 25 ~ 6. 7.	- 대상 :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집합금지 조치 노래연습장은 제외)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붙임 1. 집합금지 조치, 방역수칙 준수 및 운영자제 권고 발령 1부.
2.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1부. 끝.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수신자 군·구, 시본청, 사업소



지방보건주사 안선영 지방행정사무관 유재열 담당관 김혜경 통제관 박규웅 전결 2020.5.24.

협조자

시행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 (2020. 5. 24.) 접수 교육협력담당관-4047 (2020. 5. 25.)
본부-1796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구월동) / <http://www.incheon.go.kr/>

전화번호 032-440-7851 팩스번호 032-440-8657 / misoaci@korea.kr / 대국민 공개

인천시가 과잉대응하면 시민은 더 안전합니다